

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 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120일 (경유기관 30일, 협의기관 30일 포함)
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신 청 인	성명(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주소	전화번호

신청내용	사업명칭							
	사업목적							
	위 치				시행면적	㎡		
	시행방법				사업기간			
	토지이용현황	지목별						
		면적(㎡)						
	토지이용계획	용도별						
		면적(㎡)						
	기반시설계획	시설별						
		개 요						

「도시개발법」 제17조제2항, 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39조 및 「도시개발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대도시 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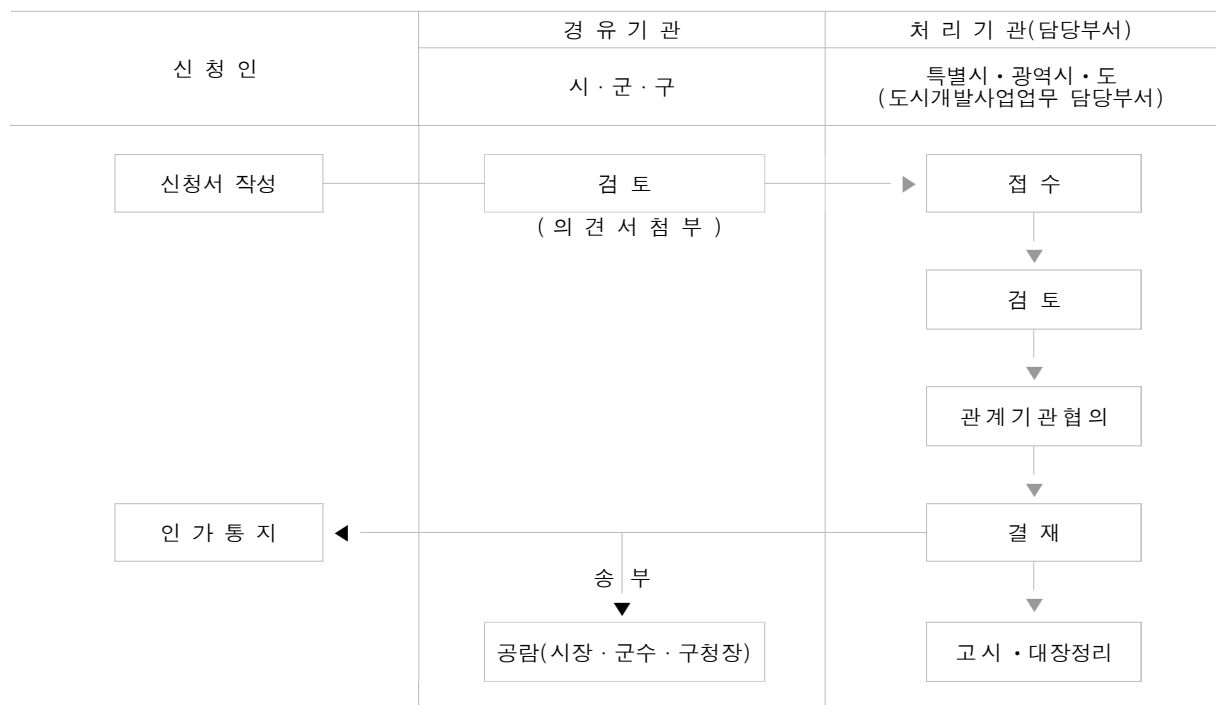
첨부서류	1.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(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합니다) 2.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3. 보상계획서(이주대책을 포함합니다) 4. 사업의 위탁 또는 신탁계획서 5.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(調書) 및 도면(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6.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(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----

(뒤 쪽으로 계속됩니다)

첨부서류	7.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 (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.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합니다. 8. 도시·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합니다)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9. 환경영향평가·교통영향평가·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 10. 「도시개발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1. 위치도 12.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
------	--

처리절차

시장·군수·구청장을 경유하는 경우,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.



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, 특별자치도지사, 대도시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경우,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.

